

제24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「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 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5. 3. 13.

임실군의회 의장

## 1. 제정이유

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효도물품 지원에 관한 목적·명칭의 정의 사항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- 나. 지원대상·시기 및 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부터 4조까지)
- 다. 지원신청 및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수급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
- 나. 예산조치 : 2015년 본예산 11,000천원 반영
- 다. 협의 등 : 예산팀장 협의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(비규제)
- 마. 기 타
  - 1) 입법예고 (2014.10.21~2014.11.09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  - 2) 비용추계서 : 붙임(미첨부사유서)
 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붙임(의견반영)
  - 4) 관련법령 발췌문 : 붙임

##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효도지원 가정”이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(실질적인 존비속관계를 유지하며 부양하는 가정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2. “효도물품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.

**제3조(지급대상 및 시기)** ① 효도지원 가정은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.

② 효도물품의 지원 시기는 매년 5월이며, 효도지원 가정의 노부 또는 노모가 90세 이상이 되는 연도부터 지원한다.

**제4조(지급기준)** 효도물품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도지원 가정의 지급대상자가 1인일 경우 연 100,000원,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연 50,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급신청 및 방법 등)** ① 효도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일이 속한 연도부터 지원한다. 다만, 지원 결정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한다.

② 읍·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효도물품 지원은 결정일을 기준하여 지원자격에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

야 하며,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원대상 가정을 확정하여 매년 5월에 효도지원 가정에 물품을 지원한다.

**제6조(지급의 중지 및 환수)**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효도물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효도지원 가정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(배우자 포함)의 사망,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도지원 가정의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원 사유가 소멸된 때
2. 효도대상 가정이 수령을 거부한 때
3.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

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효도 물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효도물품에 상당한 금원으로 지체없이 환수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**제7조(수급자격의 변동)** 거주지 읍·면장은 매년 4월말 이전에 효도물품 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변 동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##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재정수반 요인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제1호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인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해당없음

### 4. 작성자

- 주민복지과장 서 성 석

##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

관리번호	2015A전북임실008		
정책명	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제정		
소관부서	기관명	전라북도 임실군	
	부서명	주민복지과	
	담당자명	김성민	전화번호 063-640-2104
주요 분석평가 내용 (주민복지과)	<p>1.“효도지원 가정”이란 90 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<u>실질적인 존비속관계를 유지하며 부양하는 가정도 포함한다.</u></p> <p>제3조(지급대상 및 시기) ① 지급대상에 <u>법적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존비속관계를 유지하며 부양하는 가정도 심사를 통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(지급기준) <u>효도물품 지원 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지급한다.</u></p>		
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p>제2조(정의) 1.“효도지원 가정”이란 90 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(<u>실질적인 존비속관계를 유지하며 부양하는 가정도 포함한다</u>)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지급대상 및 시기) ① <u>효도지원 가정은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4조(지급기준) <u>효도물품의 지원액은 효도지원 가정의 직계존속이 1 인일 경우 연 100,000 원, 2 인일 경우에는 연 150,000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.</u></p>		
검토의견 반영 결과 (주민복지과)	<p>제2조 -효도지원 가정에 직계존비속 외에 실질적인 부양을 하는 가정도 포함(반영)</p> <p>제3조 -제2조에 포함되어 있음(반영)</p> <p>제4조 -물품지원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아닌 지급계획 품의시 반영될 사항임(미반영)</p>		
<p>2015년 02월 27일</p> <p><b>주민복지과장</b></p> <p>분석평가책임관 귀하</p>			

**참고**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체)** 「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## 제11조(부모 등의 부양에 관한 지원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